

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

##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설명

2012. 9. 27



## I 개정 배경

## II 주요 개정 내용

1 물량심사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업무범위 조정

2 물량수정에 따른 허용 오차 기준 폐지

## III 개정 효과 및 시행일자

# 1. 개정배경

- ◆ 수요기관의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관련 문제점 개선
- ◆ 현행 「최저가심사기준」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필요

## 가. 물량심사 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업무범위 조정 필요

- 수요기관에서 수행하는 물량수정 적정성 심사에 대한 민원 증가
  - 수요기관이 조달청 「최저가심사기준」을 잘못 해석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하여 민원 야기 (법적 분쟁 등)
- ☞ 따라서, 수요기관이 조달청 기준과 다르게 물량을 심사한 경우 조달청에서 적정성을 재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할 필요

# I. 개정배경

## 나. 물량수정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 폐지

□ 물량을 수정하는 허용오차 기준(-1%)이 저가투찰 수단으로 변질

○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최종확인물량보다 (-)1%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제도를 저가투찰 수단으로 악용

- (-)1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의적\* 으로 물량을 삭감<sup>1)</sup>

\* (사례) 최근 집행 3건 공사의 물량심사대상 79개 업체 중 77%인 61개사가 고의적으로 물량을 수정

☞ 따라서, 허용오차 만큼 고의적으로 물량을 삭감케 하는 허용오차 기준을 폐지할 필요

---

1) 최저입찰자부터 입찰금액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입찰자는 심사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저가로 투찰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개정 1 : 물량심사 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업무범위 조정

#### 가. 현행

- 수요기관이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처리<sup>2)</sup>
  - 조달청 「최저가심사기준」 과 수요기관 작성 “물량산출기준” 에 따라 심사
    - 물량산출적정성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도 수요기관에서 해결

---

2) 투찰율 75%이상 이면 낙찰자로 결정, 75%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나. 개정 내용

- 1)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없이 “물량검토서” 만 작성하고, 조달청은 “물량검토서\*” 의 내용에 따라 처리

\* 물량검토서에는 확인물량, 심사대상자의 물량산출 적합 여부, 이의제기 내용 등 기재

- 수요기관은 “물량검토서” 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,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“물량검토서” 를 조달청에 통보
- 조달청은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 선정  
즉, ▪ 수요기관 : 설계물량 산출 및 검토서 작성(조달청에 통보)  
▪ 조 달 청 : 통보받은 수요기관의 검토서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 심사

\* “물량검토서” 에 이상이 없거나 이의 등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물량산출 적정성 심의 생략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2) 조달청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대상에 한하여 실시(제29조, 제30조, 제32조)

- (물량심사 대상) 수요기관의 “물량산출기준” 또는 “물량검토서”가 조달청 최저가심사기준\*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민원 등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에서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
  - \*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(제29조), 물량내역서 작성기준(제30조),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(제32조)
- (물량심사 제외) 조달청 기준과 관련이 없는 수요기관이 작성한 “물량산출기준” 상의 수량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
  - \* (사유) 수요기관 관련 분쟁은 수요기관이 해결함이 타당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- (위원회 구성) 물량산출적정성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에서 물량산출적정성 심사
  - \* (사유)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제도와 기준의 해석에 관한사항으로서, 공사비 책정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된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이 심사 가능
  
- 물량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, 입찰금액적정성을 심사
  - \* 같은 날 별도로 심사하되, 물량 심사 시 수요기관 위원 평가 배제
  
- 물량심사는 이의제기한 내용의 적합여부만 판단
  - \* 물량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확인물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확인물량 검토를 요청하고, 통보받은 물량으로 적합여부 판단
  
- (심사 결과) 물량심사 적합여부는 표결위원 1/2 이상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, 1/2이상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
  - 탈락자는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열람요구 금지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개정 2 :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

#### 가. 현행

-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수요기관 산정 최종 확인물량보다 (-1)%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적합으로 판정
- (사유) 물량수정에 따른 소수점, 절사 등에 따른 오차 1%는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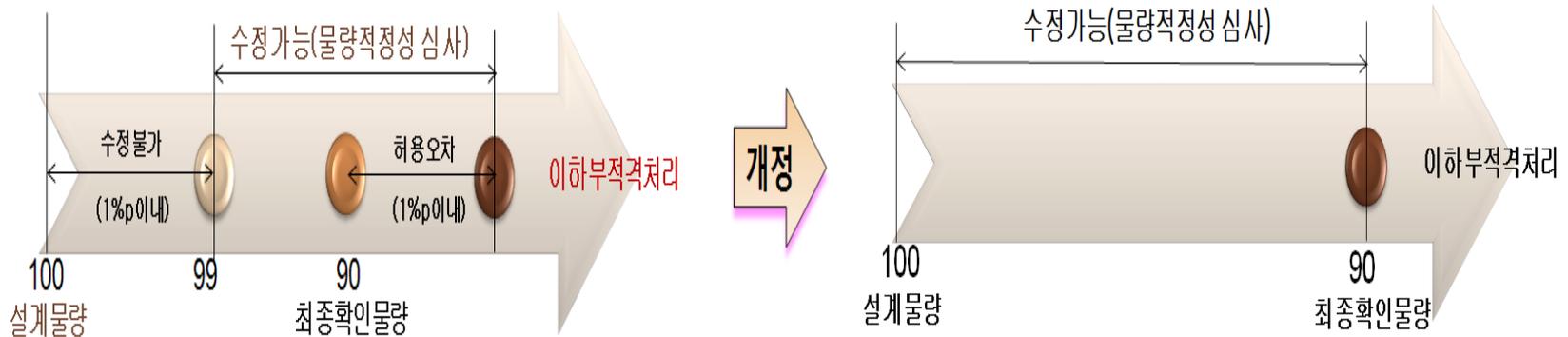
#### 나. 문제점

- 물량수정 허용오차기준(-1%)이 저가투찰수단으로 변질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다. 개정 내용

- 입찰자 수정물량이 수요기관의 최종 확인물량 보다 작으면 부적합
  - (사유) 고의적인 물량 삭감 방지로 견적능력 배양
  - (도해)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허용기준

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개정 3 : 기타 개선사항

- 조달청 기준과 수요기관 기준이 상충할 때 조달청 기준 적용
  - (현행)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“물량산출기준” 과 조달청 “세부기준” 이 다른 경우 우선순위를 명시한 규정이 없음
  - (문제)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 발생
  - (개선) 조달청 “세부기준” 과 수요기관 “물량산출기준” 이 상충한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조문에 반영(제34조제4항)

# III. 개정 효과 및 시행일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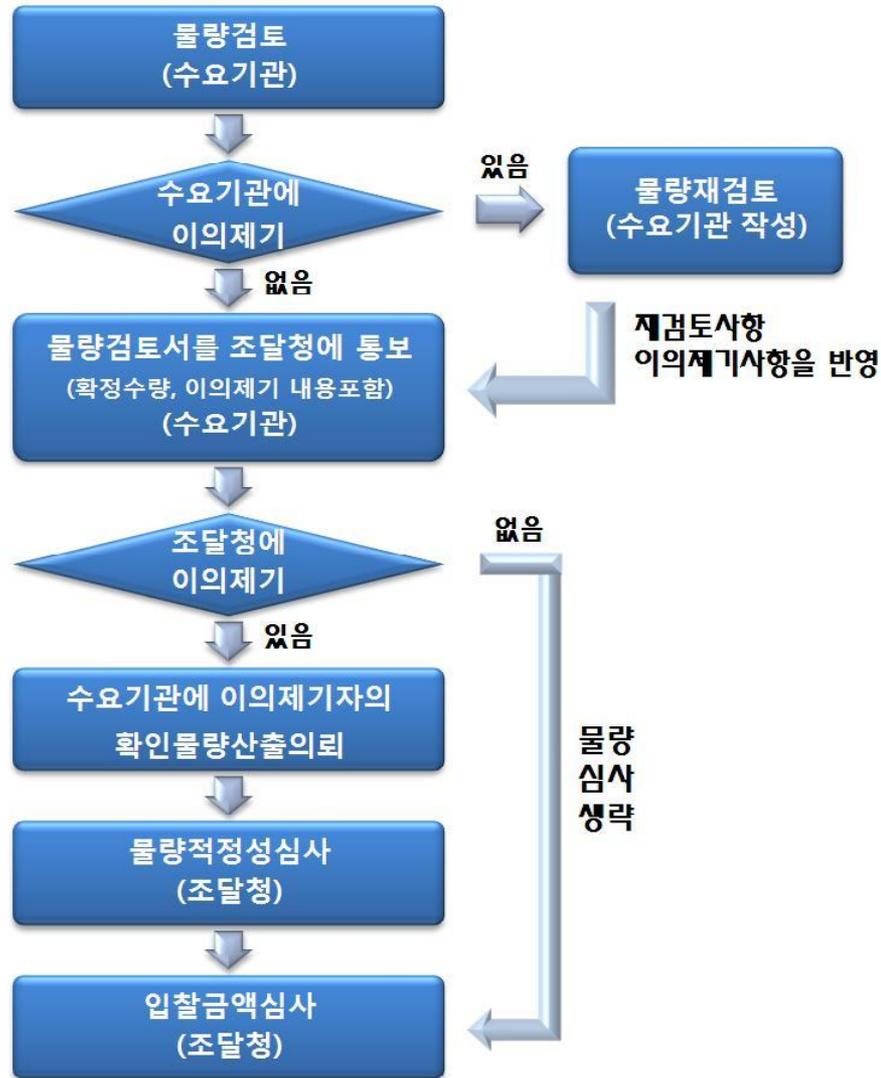
## 4. 개정 효과

- 공정한 낙찰자 선정으로 바른조달 신뢰 고양
- 견적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저가투찰 방지로 부실시공 예방

## 5. 시행 일자

- '12.10.2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

# ❖ 개정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 흐름도



# 감사합니다

